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 제출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 기존 다자녀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자녀 세 명이상에서 두 명이 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 보다 나은 양육환경조성이 이바지하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신당체육센터 사용료를 기존 공공 체육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으로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용료 등의 반환에 “이용자 취소 및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신당체육센터 사용료를 신설함(별표 3 제5호)

다.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자녀 세 명 이상”을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함(별표 4)

####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sup>1)</sup>을 위한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2자녀로 확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sup>2)</sup>를 반영하여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출생률 감소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정부 시책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체육시설(신당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또한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 다른 체육시설에 비추어 충분히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된 내용 등이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명사 사이에 사용되는 쉽표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경우” 뒤에 사용된 쉽표는 “불가능한 경우”와 “위약금 배상”을 같은 자격으로 열거하고, “등”은 이외의 것으로 각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문맥상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불가능한 경우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2022. 3. 4.)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을 위하여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그 중 자치단체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 개선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음.

○ 또한 법령을 비롯한 각종 규정, 규칙, 고시, 지침 등에는 혼란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시의 제명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의 주체이므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혹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능한 경우에”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u>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u>을 준용한다.</p> <p>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p>	<p>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u>불가능한 경우에</u>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u>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u>을 준용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 관계법령

## □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

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o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3) 신체상 피해발생	o 배상액 배상	
<b>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b>	o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전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li> <li>·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li> <li>·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li> <li>-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li> </ul> <p>o 체육시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li> </ul> <p>o 레저용역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li> </ul> <p>o 할인회원권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li> </ul>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